

[별표] <개정 2001.8.7>

택지조성원가산정표(제11조관련)

조성원가항목	내역
용지비	용지매입비? 손실보상비? 조사비?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
조성비	조성공사비(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 비등을 포함한다)?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
직접인건비	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
이주대책비	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
판매비	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
일반관리비	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(인건비? 임차료? 연구개발비? 훈련비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,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) ×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
그밖의비용	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등

비고

1. 일반관리비가 용지비?조성비?직접인건비?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.
2. “그밖의 비용”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